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9 선고 2020가단30572 판결 [하자보증금반환청구]

전 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장영준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손광남, 김동원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1.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2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와 함께 2015. 6.경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 지역본부로부터 'E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도급대금의 82% 상당액에 하도급하였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을 '이 사건 원도급', 위 하도급을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1차 공사는 2016. 3.경 준공하였으나 2차 공사는 이를 마치지 못한 채 2016. 8. 31.경 쌍방 합의로 중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기성고가 원도급금액 기준으로 합계 6,371,231,836원, 공종별로는 구조물공사 1,173,573,226원(18.42%), 관로공사 3,274,122,081원(51.39%), 기타공사 1,923,536,529원(30.19%)임을 각 확인하는 한편, 위 합계액의 82% 상당액인 5,239,382,432원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2억 2,800만 원으로 정산함과 아울러 그 중 1억 5,600만 원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고(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나머지 7,200만 원은 그 해 내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정산합의서 1. 시공완료 책임자 : A(F) 2. 정산합의 수령액 : 일금 이억이천팔백만원정(₩228,000,000) 3. 공제금액 : 1) 하자보증금 : 일금 일억오천육백만원정(₩156,000,000) 2) 하자보증기간 : 2016년 5월 1.일부터 ~ 원도급 하자보증기간에 준함 (단 하자보수금 미발생 시 상기 금액을 하자보수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함) 4. 상기 정산합의 수령액 ₩228,000,000원 중 ₩30,000,000원을 금번 추석 이전에 지급하고 하자보증금 현금예치분 ₩156,000,000을 제외한 잔액 ₩42,000,000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산합의상의 분할지급 정산금 7,200만 원 및 별건 대여금 5,3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17. 위 정산금 중 6,200만 원(1,000만 원은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됨) 및 위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고의 중복계산 및 미시공 등을 이유로 105,166,152원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26. 항소기각 및 반소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는 2018. 4.경 피고와 후속 하수급업체 등에 의해 완료되었고, 피고는 그 준공 직후인 2018. 5.경 G공제조합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공종별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 종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비 고
1	구조물공사	2018. 4. 13. ~ 2025. 4. 12.	준공일로부터 7년
2	관로공사 및 콘크리트포장공사	2018. 4. 13. ~ 2021. 4. 12.	준공일로부터 3년
3	토공사/포장공사/기계공사/전기공사	2018. 4. 13. ~ 2020. 4. 12.	준공일로부터 2년
4	기타 토목공사	2018. 4. 13. ~ 2019. 4. 12.	준공일로부터 1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8 내지 11, 23, 26, 2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공종별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하자보증기간에 준하는 기간인바, 관로공사의 경우 그 시기인 2016. 5. 1.로부터 3년 후인 2019. 4. 30.에, 기타공사의 경우 1년 후인 2017. 4. 30.에 각 그 종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증금 1억 5,600만 원 중 위 각 공정의 하자보증금 합계액인 127,264,800원[= 관로공사 해당금액 80,168,400원(1억 5,600만 원 × 51.39%) + 기타공사 해당금액 47,096,400원(1억 5,600만 원 × 30.19%)]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의 '원도급 하자보증기간에 준함'이라는 문구는 하자보증기간의 연수(年數)가 아닌 하자보증기간의 종기를 정한 문구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하자보증기간의 종기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하자보증기간의 종기에 준하는 날짜인바, 그 종기가 2019. 4. 12. 또는 2020. 4. 12.에 도래한 기타공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구분되어 예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체의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된 것이므로 그 종기는 일괄하여 구조물공사의 종기인 2025. 4. 12.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 · 피고 간에 약정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원고의 하자보증기간이 '2016년 5월 1.일부터 ~ 원도급 하자보증기간에 준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구의 전체적인 구조 내지 체계상 위 앞에 위치한 '2016년 5월 1.일부터'는 시기에 관하여, 그 뒤에 위치한 '원도급 하자보증기간에 준함'은 종기에 관하여 각 기재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당시는 준공 이전으로서 하자보증기간의 종기가 특정일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8.경 원고에 의해 착공된 후 2016. 8.경 타절 · 정산되었다가 2018. 4.경 피고와 후속 하수급업체 등에 의해 준공되었는데, 위 '2016년 5월 1.일부터,라는 시기 기재는 그러한 타절 · 정산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약 위 공사가 원고에 의해 준공되었더라면 그 시기의 기재는 '2018년 4월 13.일부터' 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주자에

대한 준공일로부터 일정시점까지의 하자보증기간에 상응하여 사실상의 일괄하수급인인 원고로부터도 그 일정시점까지의 하자보증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일 터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위와 같은 타절·정산의 경우만을 준공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채 그 하자보증기간의 종기를 훨씬 짧게 약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의 입장에서 그로 인하여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로서는 타절·정산의 경우라면 2015. 8.경부터 타절·정산까지의 시공내역에 한하여, 완공의 경우라면 2015. 8.경부터 완공까지의 전체 시공내역에 관하여 각 원도급 하자보증기간의 종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라는 개념은 준공이나 완공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완공일 이전의 기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인은 하수급인을 상대로 언제라도 오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완 내지 재시공을 지시·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나 하수급인도 언제든지 오시공 부분을 스스로 보완 내지 재시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하자보수보증이나 하자담보책임의 개념을 대입할 필요성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이나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르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기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내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기타공사의 경우 2016. 5. 1.로부터 1 년 후인 2017. 4. 30.에 그 하자 보증기간의 종기가 도래한다는 것인바, 위 시점은 이 사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로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심히 부당한 해석인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총 시공내역뿐만 아니라 각 공종별 시공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증금 액수가 결정된 점,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자담보 관련 규정 내지 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자보증금의 액수 및 보증기간은 원도급계약은 물론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개개의 공종별로 구분·특정될 필요가 있고,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원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내지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하자보증금 액수를 각 공종별 시공내역에 비례하여 안분하기로 함과 아울러 그

하자보증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원도급 하자보증기간의 각 공종별 종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시공부분 중 기타공사의 경우 이 사건 원도급계약 하자보증기간의 해당공종 종기인 2019. 4. 12.(준공일인 2018. 4. 13.경으로부터 1년 후 ; 위 표 4번 참조)에 그 하자보증기간의 종기가 도래한 반면(기타공사 중 일부의 경우 위 표 3번과 같이 그 종기가 2020. 4. 12.에 도래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의 시공내 역 이 원도급계 약의 하자보수보증서 에서 와 달리 구조물공사, 관로공사, 기타공사의 3개 공정으로만 구분 · 확정되었고,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원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됨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기타공사 전부에 관하여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타공사 중 일부가 위 표 3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종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구조물공사 및 관로공사의 경우 이 사건 원도급계약 하자보증기간의 해당공종 종기인 2025. 4. 12. 및 2021. 4. 12.(준공일인 2018. 4. 13.경으로부터 7년 후 및 3년 후 ; 위 표 1, 2번 참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증금 1억 5,600만 원 중 이미 하자보증기간의 종기가 도래한 기타공사 해당금액 47,096,400원(= 1억 5,600만 원 × 30.1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시공부분에는 역구배(배수불량 및 약취), 상수도관접합 불량, 아스콘포장 불량 및 맨홀 오시공 등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면서 합계 108,443,29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원고의 하청업자에 대한 미지급 판넬임대료, 시추조사비 등 합계 7,636,000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고가 2017. 1. 26.경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그 합산액인 116,079,290원은 이 사건

하자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의 하자 및 미지급 내역은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또는 원고 이전의 선공사 단계에서 피고나 다른 공동수급업체, 후속 하수급업체 등의 시공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와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 내지 8, 13 내지 17, 20, 21, 22, 24, 2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일인 2016. 9. 5. 이후로 이 사건 응소에 이르기까지 3년 6개월이 넘도록 원고 시공부분의 하자나 그 하자보수, 미지급액의 존재나 대위변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사전·사후 통보도 한 바 없었던 점(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 및 하자보수 요구 절차의 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차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통보 절차는 거침이 상식에 부합한다), 더욱이 2017. 7. 2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2년 넘게 선행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는 원고의 중복계산, 미시공 등을 이유로 반소까지 제기하면서도, 정작 하자 및 미지급액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대위변제액상환 등의 요구를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기간은 선행소송의 진행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주체는 원고 외에도 피고나 다른 공동수급업체, 후속 하수급업체 등 여럿이 존재하고 그 시공시점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원고와 다른 업체의 시공내역이 쉬이 구분·특정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드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나 미지급액이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0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타공사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